

「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」 입안 계획서

1. 행정규칙명

- 「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」 (관세청고시 제2022-00호, 2022. 00. 00.)

2. 제정 이유

-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5조제20항 후단에 따라 이스라엘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확인하는 절차·방법 규정
- 1967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한-이스라엘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양국 정부간 합의 이행

3. 주요 내용

-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(제2조)
 -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(별표 1)과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임을 확인해야 하는 지역(별표 2) 규정
 - 별표 1 또는 별표 2(이스라엘 점령 지역임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)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인정
 - 이스라엘 점령 지역에서 생산한 재료나 수행한 가공·공정은 비당사국에서 생산하거나 수행한 것으로 간주

□ 협정관세 적용 신청(제3조)

-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와 우편번호(이하 “생산지역”) 기재 사항이 적정한지 여부와 별표 1, 별표 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
-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·납세신고 정정신청서에 “이스라엘 생산지역 확인 필요” 문구 기재

□ 생산지역 심사 및 별표 2 지역 확인(제4조·제5조)

-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지역이 미기재 또는 부적정하게 기재되었거나, 별표 1에 해당 시 협정관세 적용 신청 반려
- 별표 2에 해당 시 관세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, 생산지역 심사를 완료한 후 수입신고 수리(수입신고수리전 심사 원칙)
- 관세청장은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해당 여부를 외교부(15일내 결과 회신 원칙)를 통해 확인한 후 세관장에게 통보

□ 협정관세 적용 제한(제6조)

- 세관장은 생산지역 심사 또는 원산지조사 결과 생산지역이 미기재·부적정 기재되거나, 별표 1·별표 2(이스라엘 점령지역임이 확인된 경우)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제한

□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생산지역 게시(제7조)

- 관세청장은 관계 부처 또는 이스라엘 관세당국과의 협의에 따른 별표 1 및 별표 2 변경사항을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
- 동 고시와 FTA포털에 게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 게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

4. 규제대상 여부 : “해당 없음”

5. 고시 전문 : “붙임”

6. 시행 일자 : 2022. 00. 00.

7. 의견제출 방법

- 제출기한: 2022. 11. 14. 까지(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)
- 담당자: 김진선 사무관(042-481-3215)
 심성훈 주무관(042-481-3206)
- 제출방법: 이메일(sim307307@korea.kr)